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52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박덕흠
배준영 · 김승수 · 김기현
조지연 · 성일종 · 이인선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흥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흥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위험성”으로 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4.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사유는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第70條(拘束의 事由)</u>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u>위험성</u>, <u>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제70조(구속의 사유)</u>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때</u> ② ----- ----- -----<u>위험성</u>----- -----. ③ (현행과 같음)